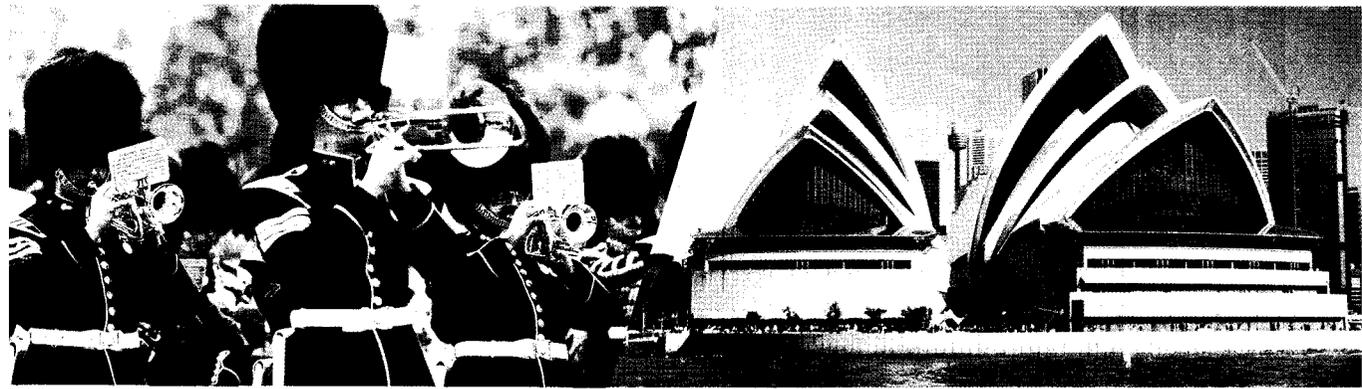


영국과 호주의 리콜 관리 현황



영국의 리콜제도

영국에서는 제품안전(product safety)과 관련하여 유럽연합(EU)의 “일반제품안전지침(GPSD: Directive 2001/95/EC on general product safety)”을 시행하기 위해 국내법화한 “일반제품안전규칙(GPSR: The General Product Safety Regulation)”과 “소비자보호법(CPA: Consumer Protection Act)” 및 개별 제품별 안전기준 등의 법제로 규율하고 있다.

결함제품에 대한 리콜은 GPSR과 CPA 및 이에 근거한 제품별 안전기준과 규제기관에서 제공하는 리콜가이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자발적 리콜이 활성화되어 있다. 다만 새로 개정된 GPSR 2005에 의해 기업은 결함정보를 통보(notification)해야 한다. 통보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통상산업부(DTI)와 지방정

부에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약품, 작업장 용품, 자동차 등 특정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을 규제하는 규제기관에 최초로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를 받은 규제기관은 그 정보를 DTI에 송부하게 된다.

GPSR 및 CPA와 각 제품별 안전기준과 리콜가이드 등은 기업으로 하여금 자발적 리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기업의 자발적 리콜여부는 결함제품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다투는 제조물책임소송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 리콜관련 법률

각 제품별로 개별법에 리콜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영국에서는 결합제품에 대한 리콜은 GPSR과 CPA에 근거한 제품안전기준과 리콜가이드를 통해 이루어진다.”

◎ 리콜관련 주요 제도

① 자발적 리콜

규제기관에서는 GPSR 및 CPA와 각 제품별 안전기준과 리콜가이드 등 리콜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리콜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② 결합제품 통보의무

GPSR 2005의 시행으로 기업은 '안전하지 않은 제품(unsafe product)' 이 시장에 놓여 있거나 그러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과 그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시정조치 내용을 관할기관(규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영국의 제품별 리콜관련 법률 현황 〉

구분	담당기관	관련법률	관장 제품군
소비자제품 (Consumer products)	지방정부 (Local Authority) 통상산업부 (DTI) the Department Operator Service Agency	- 소비자보호법 Consumer Protection Act 1987, Part II - 일반제품안전규칙 (GPSR) The General Product Safety Regulations 2005	- 일반 소비자 제품
자동차 (Vehicles)	자동차 및 운전자 서비스청 (VOSA) the Vehicle and Operator Service Agency	- 소비자보호법 Consumer Protection Act 1987, Part II - 일반제품안전규칙 (GPSR) The General Product Safety Regulations 2005	- 모든 자동차 관련 제품 all Automotive Products
산업용품	보건안전부 (HSE) Health and Safety Executive	- 소비자보호법 Consumer Protection Act 1987, Part II - 일반제품안전규칙 (GPSR) The General Product Safety Regulations 2005	- 산업용품 Products used in workplace

제품안전 리콜제도

구분	담당기관	관련법률	관장 제품군
의약품 (Medicines)	의약품규제청 (MHRA) The 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	- 소비자보호법 Consumer Protection Act 1987, Part II - 일반제품안전규칙 (GPSR) The General Product Safety Regulations 2005 - 화장품안전규칙 the Cosmetic Products (Safety) Regulations 2008	- 의약품 및 의료기기 medicines and medical device - 화장품 cosmetics



호주의 리콜제도

호주의 리콜제도는 1974년에 제정된 「상거래법 (Trade Practice Act)」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TPA에 일반공산품, 자동차, 식품 등의 소비자제품에 대하여 결함제품의 리콜 등 안전에 관련된 각종 기준들을 규정하고 있다. 리콜은 전 품목이 기본적으로 상거래법의 적용을 받지만, 각 제품별 리콜절차 등에 관하여는 해당기관에서 별도의 리콜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호주의 리콜제도는 미국이나 영국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발적 리콜을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각 제품별 규제기관에서는 리콜업무의 전반에 관하여 자문, 연수, 문서화된 가이드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리콜이 만족스럽지 못하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강제적 리콜을 명령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도 한다.

◎ 리콜관련 법률

각 제품별로 개별법에 리콜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현황은 위와 같다.

◎ 리콜관련 주요 제도

① 자발적 리콜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하여 기업은 자발적으로 결함제품에 관한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규제기관에서는 기업이 리콜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② 자문(Advice: 리콜관련 지원)

각 제품별 규제기관에서 리콜업무와 관련한 자문과 문서화된 가이드, 체크리스트 및 연수를 통하여 기업이 자발적 리콜을 위한 준비와 리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호주는 각 제품별 리콜절차는 해당기관에서 별도의 리콜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호주의 제품별 리콜관련 법률 현황〉

구분	담당기관	관련법률	관장 제품군
소비 생활용 제품	경쟁·소비자 위원회 (ACCC)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 상거래법 TPA, s.65R Trade Practive Act	- 각종 소비자 제품
자동차	기반·교통·지역개발부, 지방정부 Department of Infrastructure Transport, Reional Development, Local Government	- 상거래법 TPA, s.65R Trade Practive Act - 자동차·관련제품의 안전 관련 결함에 관한 리콜 절차 Procedure for the recall of vehicles and associated products with safety related defects, 2002	- 자동차 - 자동차장치 (타이어, 안전시트)
치료용 제품	치료용품국 (TGA)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 상거래법 TPA, s.65R Trade Practive Act - 치료용품의 통일 리콜 절차 Uniform recall procedure for therapeutic goods, 2004	- 의약품(medicines) - 의료기기 (medical equipment)
식품	호주·뉴질랜드식품 표준국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 상거래법 TPA, s.65R Trade Practive Act - 식품산업 리콜 프로토콜 Food industry recall protocol: A guide to writing a food recall plan and conducting a food recall, 6th edition, 2008	- 식품

③ 감시(Oversight)

각 제품별 규제기관에서는 요구하는 신고, 기업의 리콜전략에 대한 개발자료 및 최종승인, 그리고 리콜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 대한 보고 등을 통하여 리콜의 효과적인 관리를 감시하고 있다.

④ 개입(Intervention: 리콜명령 등)

각 제품별 규제기관에서는 리콜이 만족스럽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 강제적 리콜(compulsory recall)을 명령할 수 있다. 더불어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 제품의 제공에 대한 벌칙도 부과된다.